

2.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
3. 방류수의 수집관리
4.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
5. 시설물 내의 전기,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
6.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소장) ①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 5 조 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의 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와 부천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요지**가. 제안이유**

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(안 제7조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**가. 찬성토론**

☐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☐ 없 음

5. 심사결과

☐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☐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☐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☐ 없 음

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61
의결 년월일	95. 3. 28 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7

제출자 : 부천시장

☐ 제안이유

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(안 제7조 제2항)

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중 “새마을과장”을 “사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구성) ①~② (생략)	제3조(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부시장, 경찰서장, 농촌지도소장, 총무과장, <u>새마을과장</u> , 산업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그밖의 위원은 새마을운동유관기관, 단체의 장과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, 새마을부녀회 연합회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된다.	③ <u>사회진흥과장</u>